

심사보고서

【남양주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】

의안번호

357

2024. 1. 25.

복지환경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연월일 및 제출자 : 2024. 1. 16. / 김영실 의원 등 14명
나. 회부일자 : 2024. 1. 16.
다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24. 1. 25.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남양주 시민의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심폐소생술 교육을 활성화하여 응급상황에서 환자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조례 목적과 정의, 시장의 책무를 규정 함 (안 제1조~제3조)
- 심폐소생술 교육계획 및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(안 제4조~제5조)
- 심폐소생술 교육, 상설교육장의 운영에 관한 규정 (안 제6조~제7조)
- 심폐소생술 교육을 위한 지원과 홍보, 준수사항에 대해 규정 함 (안 제8조~제10조)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서용관)

- 본 안건은 남양주 시민이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의 교육·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.

- 심폐소생술은 환자의 생존율을 최대 3배까지 높일 수 있는 응급치료법으로서, 심정지 환자 발생시 첫 목격자일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환자의 가족과 동료, 지역주민이 신속하게 대응하여 응급조치하기 위해서는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 확산과 홍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음.
- 또한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서 모든 국민은 응급상황에서의 응급처리 요령과 기본적인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으며, 지방자치단체는 그에 대한 교육·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.
- 따라서 본 조례 제정시 심폐소생술에 대한 인식 향상과 응급처치 대응을 확산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검토결과 시민에 대한 침익적 내용이 없는 자치사무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임.

4. 질의·답변요지 :

- 회의록 참고

5. 토론요지 : 없 음

6. 심사결과 : 『원안가결』

7. 소수의견 요지 : 없 음